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일시적 비공개 전환 및 관련 자료 보존〉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644호)

2025.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불법촬영물에 대한 일시적 비공개 전환 및 관련 자료 보존(안 제44 조의7 제4항 및 제7항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득구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1. 18.

다. 회 부 일 : 2024. 1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등 다양한 성범죄물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정보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어 심사가 늦어지는 경우 게시글 삭제 조치가 지체되어 유포를 적시에 막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조치로 증거가 소멸되어 수사와 가해자 처벌에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시적 비공개 전환과 자료 보존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범죄물의 유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증거를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4항·제7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불법촬영물에 대한 일시적 비공개 전환 및 관련 자료 보존 (안 제44조의7 제4항 및 제7항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의 일시적 비공개 전환 및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보존을 명할 수 있음(안 제44조의7 제4항).
- 일시적 비공개 전환 및 자료 보존의 기간·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정보통신</u>

현행	개정안
④·⑤ (생략) <신설>	<u>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일시적 비공개 전환 및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u>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⑦ <u>제4항에 따른 일시적 비공개 전환 및 자료 보존의 기간·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불법정보”)를 규정하면서,
-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¹⁾.

1)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²⁾에 따른 촬영물·복제물(이하 “불법촬영물”)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로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불법정보에 해당함.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관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2)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심의·차단제도>

구분	정보 유형	차단 절차
제1항 제1호 ~제6호의3	- 음란정보 - 명예훼손 정보 - 공포심·불안감 유발 정보 - 정보통신시스템 훼손 등 정보 - 법령 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 - 불법 사행행위 정보 - 불법 개인정보 거래 정보 - 총포·화약류 제조법·설계도 등	① 방심위의 심의 ②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제1항 제7호 ~제9호	- 국가기밀 누설 정보 - 국가보안법상 금지행위 수행 정보 - 그 밖에 범죄 목적·교사·방조 정보(<u>불법촬영물</u> 포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u>불법촬영물</u>의 경우 수사기관의 장 포함)의 요청 ② 방심위의 심의·시정요구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촬영물의 차단을 명하기 위해서는 방심위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므로, 방심위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 불법촬영물의 차단 또한 지연될 우려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심의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불법촬영물의 일시적 비공개 전환과 수사에 필요한 자료의 보존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 유통은 그 특성상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정보의 반복·재생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커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불법촬영물에 대한 방심위 심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방심위의 심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불법촬영물이 삭제되는 경우 증거가 소실되어 수사기관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불법촬영물에 대한 방심위 심의·시정요구 현황>

(단위: 건)

	심의			시정요구				
	계	대면의결	서면의결	계	삭제	접속 차단	이용해지·정지	기타
2022	51,202	3,839	47,363	51,202	15	51,187	0	0
2023	59,217	1,243	57,974	59,217	11	59,197	9	0
2024.10.	57,961	260	57,701	57,961	3	57,958	0	0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방심위의 심의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정보의 비공개 전환 등을 명할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심의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심의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상시 전자심의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³⁾,

3)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6조(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둔다.

②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제17조(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①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정보통신내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의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내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정보의 내용에

특히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심의·의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⁴⁾.

○ 이에 따라 2022년부터 2024년 10월 현재까지 수사기관장 등의 불법촬영물 심의 요청부터 방심위 의결까지 소요된 평균 시간은 1일 이내로,

방심위 심의가 지연되어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적시에 막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또한, 방심위는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 기관으로⁵⁾, 불법촬영물을 포함한 불법정보의 심의는 법률상 방심위의 직무에 해당함⁶⁾.

○ 따라서 설령 심의가 늦어지는 사례가 다수 있다고 하더라도, 심의의

대한 심의결과,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내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원 공개 정보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심의대상에 준하는 성(性) 관련 초상권 등 침해정보의 심의결과,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그 직무를 위임하거나 처리를 요청한 사항

4) 제22조(회의 등)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예외를 두기보다는 조속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둘째, 증거 등 자료 보존에 대해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및 「전기통신사업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국가가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도록 하면서,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⁷⁾.
- 따라서 현행법에서 이미 국가가 직접 근거자료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다시 사업자에게 자료의 보존을 명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은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

7)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통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촬영물등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⁸⁾.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관련 자료 보존의무가 「전기통신사업법」의 유통방지 의무와 중복 또는 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법체계를 고려할 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도 함께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534호, 2025.6.4. 시행)은 불법촬영물뿐만 아니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⁹⁾.

8)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9)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3. (생략)

- 따라서 수사기관의 장이 허위영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도 정보의 일시적 비공개 전환 및 자료 보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한다고 보임.
- 참고로, 앞서 언급한 성폭력방지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또한 불법 촬영물뿐만 아니라 허위영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도 조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개정안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과 상충되며, 방심위 심의 절차 없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일시적 비공개 전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위축 및 정부 검열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첫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받았더라도 개정안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타 법령과의 상충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에 해당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지체 없이’ 불법촬영물을 삭제하여야 하는 의무와 개정안에 따른 자료 보존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여 두 법률 간 상충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을 일시적으로 비공개 전환하거나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경우 불법 촬영물의 소지·저장을 금지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을 위반 하게 되므로 개정안에 따른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함¹⁰⁾.

- 현재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불법촬영물 조치 이후에는 해당 정보를 보관하지 않고 파기하고 있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일시적 비공개 전환’은 불법촬영물등에 대하여 지체없이 삭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와 충돌되고, 일시적 비공개 전환은 해당 원본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보관(소지·저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10)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 의 처
02)6788-5230